

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6. 6. 15.

제안자 : 이광종 의원의외

□ 수정 이유

- 조문 이해의 용이성, 명확성, 통일성을 기함은 물론, 현실 운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

□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4조제1항중 "충청북도체육회(이하"수탁자"라 한다)에"를 "충청북도체육회 등(이하"수탁자"라 한다)에"로 하고, 동조제2항중 "위.수탁 기간은"을"위탁 기간은"으로 함.
- 안 제9조제2항중 "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"를 "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"로 함.
- 안 제10조제3항중 "체육회장은"을"수탁자는"으로 함.

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중 "충청북도체육회(이하"수탁자"라 한다)에"를
"충청북도체육회 등(이하"수탁자"라 한다)에"로 하고,
동조제2항중 "위·수탁 기간은"을"위탁 기간은"으로 한다.

안 제9조제2항중 "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"를
"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"로
한다.

안 제10조제3항중 "체육회장은"을"수탁자는"으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</p> <p>제4조(관리및위탁운영)</p> <p>①충청북도지사(이하"도지사"라 한다)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<u>충청북도체육회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에</u>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<u>위수탁 기간은 3년</u>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 "생략"</p> <p>제9조(회계운영) ① "생략"</p> <p>②수탁자는 체육시설의 회계운영을 함에 있어 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하여야 하며, <u>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</u>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감독) ①~② "생략"</p> <p>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<u>체육회장은</u> 이에 따라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</p> <p>제4조(관리및위탁운영)</p> <p>①..... <u>충청북도체육회</u> <u>등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에</u></p> <p>②....., <u>위탁 기간은</u>.....</p> <p>③ "현행과 같음"</p> <p>제9조(회계운영) ① "현행과 같음"</p> <p>②....., <u>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</u> <u>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</u></p> <p>제10조(감독) ①~② "생략"</p> <p>③..... <u>수탁자는</u></p>